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5505

발의연월일: 2024. 11. 13.

발 의 자:김정호·서왕진·박홍배

허종식 · 안호영 · 전재수

정성호 • 이수진 • 이훈기

박희승 · 최기상 · 윤후덕

어기구 • 박 정 • 이연희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가소비용직수입자(자기가 발전용·산업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소비할 목적으로 천연가스를 직접 수입하는 자에게 말함)가 설비의 신설·증설 등으로 신규 수요가 발생하는 경우와 가스도매사업자인 천연가스수출입업자와 체결한 가스 공급에 관한 계약이해지·만료되거나 그 계약에서 자가소비용직수입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정한 경우에만 신고한 물량 외에 추가로 천연가스를 수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 외에는 천연가스 수입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천연가스 도입가격이 상승하면서 자가소비용직수입자들이 국제 천연가스 시황과 평균요금 수준을 비교하여 유리한 경우에만 수입 여부와 시기를 선택적으로 결정하고 있음. 이로 인해 한국

가스공사는 상대적으로 비싼 가격의 천연가스를 구입하면서 경영 상황이 악화되고 있어, 천연가스 가격에 따라 직수입과 도시가스 물량을 선택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방지하도록 자가소비용직수입자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자가소비용직수입자의 천연가스 추가 수입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 일정기간 천연가스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자가소비용수입자의 천연가스 추가 또는 별도 수입 금지 사항 준수 여부와 조정 명령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자료제출 요구 및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 함으로써 적정한 가스요금와 전기요금의 책정으로 국민편익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9 및 제40조 등).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가스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4호 중 "제40조제2항"을 "제40조제4항"으로 한다.

제10조의9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규정을 위반 한 자가소비용수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동안 천연 가스 수입을 제한할 수 있다.
-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자가소비용직수입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자가소비용직수입자의 사무소와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대장, 그 밖의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⑥ 제5항에 따라 출입·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제4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가소비용직수입자에 필요한 조정을 명령하거나 명령 이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자가소비용직수입자의 사무소와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대장, 그 밖의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출입・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제54조제3항에 제1호의3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의3. 제10조의9제5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자
 - 6. 제40조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 한 자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허가의 취소 등) ① 산업통	제9조(허가의 취소 등) ①
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스도	
매사업자와 일반도시가스사업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거나 도시가스충전사	
업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8호의2, 제8호의3, 제9호, 제9	
호의2 또는 제10호부터 제12호	
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	
나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	
스제조사업자와 합성천연가스	
제조사업자가 제1호부터 제5호	
까지, 제8호, 제8호의2, 제8호의	
3, 제9호, 제9호의2 또는 제10	
호부터 제16호까지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	
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나 제한	
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
나 제4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 13. (생 략)	1. ~ 13. (현행과 같음)

14. 제40조제2항에 따른 통폐합 14. 제40조제4항-----명령을 위반한 경우

15. · 16. (생략)

② (생략)

제10조의9(자가소비용직수입 천 제10조의9(자가소비용직수입 천 연가스 대상물량) ① ~ ③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15. • 1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연가스 대상물량) ① ~ ③ (현 행과 같음)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 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규정 을 위반한 자가소비용수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동안 천연가스 수입을 제 한할 수 있다.
-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자가 소비용직수입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수하는 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 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요 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 로 하여금 해당 자가소비용직 수입자의 사무소와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대장, 그 밖의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출입・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제40조(조정명령 등) ① (생 략)

<신 설>

<신 설>

② ~ ④ (생 략)

제54조(과태료) ①・② (생 략)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1의2. (생략) <신설>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40조(조정명령 등) ① (현행과 같음)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 항에 따라 자가소비용직수입자 에 필요한 조정을 명령하거나 명령 이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 으로 하여금 해당 자가소비용 직수입자의 사무소와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대장, 그 밖의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출입·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u>④</u> ~ <u>⑥</u> (현행 제2항부터 제4 항까지와 같음)

제54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 ③ -----
- -----.
- 1.·1의2. (현행과 같음) 1의3. 제10조의9제5항에 따른

2. ~ 5. (생 략) <신 설>

④ ~ ⑦ (생 략)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또는 조

 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자

- 2. ~ 5. (현행과 같음)
- 6. 제40조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자

④ ~ ⑦ (현행과 같음)